

# 조 례 안 예 고

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 - 3호

##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1일

창원시의회 의장

### 1. 자치법규명

「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### 2. 제정이유

의원의 고유 권한인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

나.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 보고 규정을 신설함

### 4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(참조: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: 우)51435 /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

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(전화:055-225-5375, FAX:055-225-4743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우편, 팩스, 이메일(jeonhr1@korea.kr), 직접 방문 등

#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영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8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1. 10.

발 의 의 원: 김영록 · 강창석 · 김묘정 · 박승엽 · 박해정  
서명일 · 안상우 · 이원주 · 최정훈  
황점복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의원의 고유 권한인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(안 제7조제8항)

나.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의 보고 규정을 신설함(안 제40조제7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

나. 관계 법령

다. 현행 규칙

##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8항 중 “제5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제4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제7항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0조(5분 자유발언) ① ~ ⑥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40조(5분 자유발언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</p>

## ■ 지방자치법

**제48조(서류제출 요구)**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,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·자기디스크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.

**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52조(의회규칙)**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■ 지방자치법 시행령

**제40조(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)** ①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**제54조(대리 출석·답변의 통보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·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## ■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에 따라 창원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2조(등록) 창원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 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3조(의석 배정)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배정한 다음 비례대표는 당선인이 많은 정당순서에 따라 정당별로 공고한 의원명단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개정 2022. 10. 7.>

제4조(개회식)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.<개정 2022. 10. 7.>

제5조(선서)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. 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”

제6조(의회의 개폐선포)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.

제7조(청가 및 결석)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의원의 청가는 출산휴가와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.<개정 2023. 5. 10.>

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.<신설 2023. 5. 10.>

④ 의장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의원에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. 이 경우 출산휴가의 마지막 날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있어야 하며,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<신설 2023. 5. 10.>

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⑥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록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⑧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.

### 제2장 의장과 부의장

제8조(의장, 부의장의 선거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
-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한 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한다. 다만, 선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<개정 2019.6.28.>
-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.
- ⑤ 의장,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 또는 의원 당선자는 선거 2일전까지 의회사무국에 후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⑥ 제5항에 따른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하며, 정견발표 시에는 본인의 정견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·비방하는 발언 등을 해서는 안되며, 발표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서로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9조(의장, 부의장의 임기)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.

-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달까지 재임한다.<개정 2022.10.7.>

제10조(임시의장의 선거)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- ② 제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선,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.

제10조의2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1. 13.]

제11조(의장, 부의장의 사임)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-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11조의2(의장·부의장의 겸직금지)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. (개정 2012.1.31)

### 제3장 회의

#### 제1절 회의의 개폐

제12조(회기)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,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.
-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
제13조(개의)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.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.
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개의, 정회, 산회 및 휴회는 의장이 선포한다.

-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, 산회, 휴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.

제15조(휴회)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.

-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.

#### 제2절 의사일정

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① 의장은 개의일시,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록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



게 배부한다.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본회의 의결이나,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 (개정 2012. 1. 31)

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.

제17조(의사일정의 변경)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18조(의사일정의 미료안건)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.

제19조(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않고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
1.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
2.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
3. 의원의 청가에 관한 건
4. 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에 관한 건
5.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안건회부에 관한 건
6. 법 제122조제2항 규정의 선결처분에 관한 승인의 건
7. 그 밖에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

### 제3절 의안 및 동의

제2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5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렇지 않다.<개정 2022. 1. 13.>

③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조례안의 경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.<신설 2019.10.30., 2022. 1. 13.>

제20조의2(조례안 예고)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·주요내용·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(이하 “의견제출자”라 한다)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21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3.>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.<개정 2022.

1. 13.>

1. 의장·임시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의 선거
2. 의장·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
3.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
4.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·개임의 건
5.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
6.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
7. 의원의 청가(5일 초과인 경우를 말한다)에 관한 건
8.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
9.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
10.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
11.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
12.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·변경의 건
13.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
14.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
15.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
16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

제22조(특별위원회 회부)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3조(심사기간)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24조(전문가의 활용) 의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25조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26조(동의를 의제성립)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
제27조(수정동의)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.

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.

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<개정 2022.1.13.>

제28조(의안, 동의의 철회)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,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사람이 청구해야 한다. 다만,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,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려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29조(변안) 변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,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.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.

제30조(안건심의)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,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2.11.26>

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.

제31조(재 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 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32조(의안의 정리)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, 문구, 숫자,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제33조(의안의 이송)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.

#### 제4절 발 언

제34조(발언의 허가)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
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④ 발언의 신청시간은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안건이 토론 종결된 경우와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35조(발언의 장소)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하였을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36조(발언의 계속)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.<개정 2022. 1. 13., 2022. 10. 7.>

제37조(의제외 발언의 금지)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.<개정 2022. 1. 13., 2022. 10. 7.>

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.<개정 2022. 10. 7.>

제38조(발언횟수의 제한)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 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,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39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의·토론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발언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.<개정 2019.6.28, 2023.1.18.>

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

재할 수 있다.

- 제40조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"5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단, 시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는다.<개정 2019.6.28., 2022. 1. 13.>
-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발언취지의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일정 확정 후 익일 09:00부터 의장에게 먼저 신청하고 발언 원고는 본회의 개의 전일(토요일·공휴일은 제외한다) 18:00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9.6.28., 2020. 12. 11., 2022. 1. 13.>
-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의장이 정한다.<개정 2021. 4. 27.>
- ④ 의장은 발언취지의 원고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⑤ 5분 자유발언은 한 회기 중 1인 1회에 한정한다. 다만, 의장은 제1항에 따른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<신설 2019.10.30.>
- ⑥ 5분 자유발언 신청 취소 시 다음 한 회기 동안 발언 신청을 제한한다. 다만, 본회의 개의 전 48시간 이전 취소 시는 제외한다.<신설 2020. 12. 11.><개정 2021. 4. 27.>

제41조(보충보고)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42조(토론의 통지)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.

제43조(의장의 토론참가)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.

제44조(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)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.

② 의원 두 명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.

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#### 제5절 표결

제45조(표결의 선포 등)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고,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46조(표결의 참가)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. 그러나 투표에 따라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47조(의사변경의 금지)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.

제48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.<개정 2019. 1. 24., 2022. 1. 13.>

② 삭제 <2022. 1. 13.>

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. 다만,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

결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④ 삭제 <2022. 1. 13.>

제49조(투표절차) ① 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.

②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·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.

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. 다만,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하지 않는다.<개정 2022. 1. 13.>

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

제50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.

1.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.

2.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.

3.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.

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. 이 경우 원안이란 의원, 위원회, 시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. <후단 신설 2019.10.30.>

제6절 회의록

제51조(회의록 작성)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.

1. 개회, 폐회에 관한 사항

2. 개의, 회의중지, 산회의 일시

3. 의사일정

4.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

5.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

6.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, 변동

7. 제반 보고사항

8. 의안의 발의, 제출, 회부, 환부,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

9. 부의안건과 그 내용

10. 의사

11. 표결수, 표결방법, 투표자 및 찬·반 의원의 성명<개정 2019. 1. 24.>

12. 서면 질문과 답변서

13. 의원의 발언 보충서

14.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.

제52조(회의록의 서명과 보존) ① 회의록에는 의장,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,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두 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. 다만,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.<개정 2022. 10. 7.>

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.

제53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,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

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록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54조(회의록 배부 및 공개)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. 다만,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.<개정 2022. 1. 13.>

-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, 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,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⑤ 삭제 <2022. 10. 7.>

제4장 위원회

제55조(의사일정과 개회일시)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<개정 2012.11.26>

제56조(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)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.

제57조(위원회에서의 동의)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58조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.

제58조의2(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) 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으며,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 1. 13.]

제58조의3(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) ① 의장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(이하 “대표자”라 한다)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13.]

제59조(위원회의 심사)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, 토론,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삭제 <2022. 1. 13.>

제59조의2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) ①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이 규칙에 따른 의원 발의 조례안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의·의결한다.

②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(대

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

③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이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13.]

제60조(위원의 발언)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
제61조(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)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.

제62조(위원회의 의사, 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63조(연석회의)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③ 연석회의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제64조(공청회)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, 경험이 있는 사람 등(이하 "진술인"이라 한다)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,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제65조(심사보고서의 제출)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<개정 2020. 12. 11., 2022. 1. 13.>

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 또는 인쇄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. 다만, 긴급 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20. 12. 11.>

제66조(위원장의 보고)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.

제67조(위원회 회의록)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.<개정 2022. 10. 7.>

1. 개의,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
2. 의사일정
3. 출석위원의 성명
4. 출석한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
5. 출석한 공무원, 진술인의 성명
6. 심사안전명
7. 의사
8. 표결 수
9. 위원장의 보고

10.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
11.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.<개정 2012.11.26., 2022. 10. 7.>
- 제68조(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)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이나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,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. 다만,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####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

- 제69조(예산안의 심의) ① 의회에 예산안(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11. 3. 4) (개정 2012.1.31)
-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이하 "예결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.
-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,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회신이 되지 않는 때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신설 2023. 3. 17.>
- 제70조(예산안의 수정동의)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.
- 제71조(예산안의 의결)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-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.
- 제72조(예산안의 재심요구) 예결위원회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73조(결산의 심사) ① 의회에 결산(기금결산보고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12.1.31)
-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③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.

#### 제6장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

- 제74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-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·답변해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- 제75조(시정에 대한 질문)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(이하 "시정질문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- ② 시정질문은 1문 1답의 방식으로 하되,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



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고, 보충질문은 할 수 없다.<개정 2022. 1. 13.>

③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및 질문대상자 등을 기록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(토요일·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.<개정 2021. 4. 27., 2022. 1. 13.>

제76조(시장에 대한 서면질문)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.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.

제76조의2(시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) 의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요구한 서류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면 이를 해당의원에게 지체없이 배부한다.<개정 2012.1.31, 2012.11.26, 2022. 1. 13.>

제77조(시장 등의 발언)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

제78조(사직)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, 2022. 10. 7.>

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. 다만,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제79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,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80조(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)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. 다만,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
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.

제81조(당사자의 심문과 발언)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, 발언할 수 있다.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,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.

#### 제8장 질서

제82조(경호)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.

제83조(회의의 질서유지)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<개정 2022. 1. 13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
2.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, 잡지, 간행물,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
3.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,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, 녹화, 촬영행위
4.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
5.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
6.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제84조(회의장 출입의 제한) 회의장 안에는 의원, 관계공무원이나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.

제85조(방청의 허가)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.

제86조(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)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.

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, 단체방청권, 장기방청권으로 한다.

제87조(방청권의 교부 및 기록)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.

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.

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.

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, 성명,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88조(방청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.<개정 2022. 1. 13., 2022. 10. 7.>

1.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
2. 술기운이 있는 사람
3. 삭제<2012.11.26>

4.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

② 의장이 필요할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0. 7.>

제89조(방청인의 준수사항)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.<개정 2022. 10. 7.>

1.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
2. 모자,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
3.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
4.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
5. 신문이나 그 밖의 서적류 열독행위
6.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, 녹화, 촬영행위
7.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
8.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
제90조(녹음, 녹화 등)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(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)에서의 녹음, 녹화,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.

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, 녹화,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90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의 회의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다.<신설 2019.10.30.>

제90조의3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 서의 회의에 한정한다)를 그 대상으로 한다.

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정회 등의 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제54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다.<개정 2022. 1. 13.>

③ 의장은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<신설 2019.10.30.>

#### 제9장 윤리심사와 징계

제91조(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 의장은 「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」 제4조 윤리심사대상의원(이하 "윤리심사대상자"라 한다)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"징계대상자"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<개정 2021. 4. 27., 2022. 1. 13., 2022. 10. 7.>

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록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, 그 사유를 기록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<개정 2022. 1. 13., 2022. 10. 7.>

④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,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⑤ 삭제 <2022. 1. 13.>

제92조(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) ① 제91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윤리심사 또는 징계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,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, 2022. 10. 7.>

② 제91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,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부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93조(의사의 비공개)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.<개정 2022. 1. 13.>

제94조(심문 및 변명)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,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95조(윤리심사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)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.<개정 2022. 1. 13.>

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.

제96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)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(이하 "자문위원"이라 한다)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윤리심사자문위원장(이하 "자문위원장"이라 한다)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개정 2022. 10. 7.>

② 자문위원은 공정성·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,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

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.<개정 2022. 10. 7.>

③ 자문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다.<신설 2022. 10. 7.>  
[본조신설 2022. 1. 13.][제목개정 2022. 10. 7.]

제97조(자문위원의 임기)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0. 7.>

②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한다.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2. 10. 7.>

[본조신설 2022. 1. 13.]

제98조(자문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자문위원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개정 2022. 10. 7.>

③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<개정 2022. 10. 7.>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2.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 3.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 4.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- ④ 자문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「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2. 10. 7.>

[본조신설 2022. 1. 13.]

제99조(비밀유지)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13.]